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418차 회의(1973.10.2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기관총과 자동화기를 반입한 사실과 철조망 설치 및 식별표식을 하지 않은 무장인원의 불법 출입에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 규정을 초과한 무장인원의 출입에 대해 항의하고 북한측이 항의하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지연하여 통보함으로써 사실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19차 회의(1973.11.1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고의적으로 비서장회의를 지연시켰다고 항의하고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일대에 기관총과 자동무기를 다량 반입하여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 식별표식이 없는 인원들의 불법 출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정전협정위반 행위들의 항의와 토의는 비서장의 기본임무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비서장회의의 기능에 맞는 실질적인 토의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제420차 회의(1973.12.1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와 중화기 반입에 대해 항의하고 미국이 남한 군인들을 부추겨 비무장지대 내에 M-16 자동소총 등 각종 중화기를 반입하여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항의한 내용들을 조사하여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북한측이 터무니없는 항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09차~제420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기관총을 반입하였다며 지속적인 상투적 항의만을 반복하였고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공동경비구역 중무기 반입, 정찰기 정탐활동, 무장간첩침투,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외국군 철수 및 병력감축, 공동경비구역 위반행위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1973년도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7) 1972년 이후 한국의 내부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등 남북 대화는 계속되었는데, 1972년 11월, 1973년 3월, 6월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이 그 사례이다.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2차 본회담에서 북한은 군비경쟁 중지, 군대 10만 이하 축소, 외국으로부터 군수물자 반입금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군사 분야 5개항 제안하였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는 기간 내내 남과 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13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6차~제350차

관리번호 : CA0004574
쪽수 : 387쪽
생산일자 : 1973년 12월 1일 ~ 1974년 5월 1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46차(1973.12.1)~제350차(1974.5.14)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측은 우리측 함선들이 북한측 해역을 수차례 침범하여 염탐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서해 5도 수역(水域)을 포괄하는 해변은 북한측의 연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측은 재 비무장화를 위한 초치계획 수립을 제의하고 북한측의 남침용 제1땅굴 굴설에 항의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46차(1973.12.1)~제350차 회의(1974.5.14)는 제348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중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는데,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록의 특이사항은 주중측이 제346차 회의에서 서해 5도 수역을 포괄하는 해변은 북한측의 연해라고 주장하고 5개 섬을 출입하려면 북한측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제346차 회의(1973.12.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 함선들이 북한측 해역을 수차

레 침범하여 염탐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서해 5개 섬의 수역을 포괄하는 해변은 북한측의 연해라고 주장하였으며 정전협정 13항 ㄴ목⁸⁾을 인용, 서해 5개 섬은 북한측 연해에 있으며 유엔측이 다만 이를 통제할 뿐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서해 5개 섬을 출입할 때면 북한측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하고 북한측 초계정의 우리측 해역 침입을 비난하고 서해 5도에 관련한 북한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차후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우리측 해역에 월경행위를 즉각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제347차 회의(1973.12.2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해상침범과 공중정찰 활동을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중무기 반입과 사격을 항의하였으며 서해 5개섬 주변 해역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책임이며, 유엔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이 인천 백령도를 운항하는 민간선과 군 선박들을 위협하여 항해를 방해하였다고 항의하고 정전협정 15항⁹⁾을 인용하여 북한측의 서해 5개섬 주변 수역 통제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였고 정전협정 13항 ㄴ목과 정전협정 15항에 대해 북한측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48차 회의(1974.2.28, 유엔측)에서 유엔측은 2월 15일 서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한국의 '수원 32호, 수원 33호'에 대하여 북한측 무장함선이 공격을 가하여 '수원 32호'를 침몰시키고 '수원 33호'는 나포하여 갔음을 항의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해하고 북으로 강제 나포한 비인도적 행위를 비난하고, '수원 33호'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우리측이 어선으로 가장한 무장함정을 북한측 해역에 침투시켜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나포한 '수원33호' 선원들의 자백내용이라고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면서 문제의 2척의 배는 간첩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49차 회의(1974.4.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SR-71 등 고공정찰기를 이용 북한지역을 정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반동포과 기관총 등을 반입하여 북한지역을 향하여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내용은 근거없이 허위로 조작한 내용이라고 일축하였다.

제350차 회의(1974.5.1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남한 내에 전투장비 반입과 SR-71 등 정찰과 전투기 등의 북한측지역 침범에 대해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 중무기 반입과 사격을 항의하였으며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이 고의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미드웨이호 등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



CET0039493 북한만행규탄결기대회, 1974 <규탄하자 공산야욕 타도하자 북괴만행>, <납북어선 보상하고 납북어민 송환하라> 등의 플래카드가 보인다.

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측 헬기에 대하여 북한측이 대공사격을 가하였음을 항의하고 북한측이 나포해 간 '수원 33호'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46차 회의(1973.12.1)~제350차 회의(1974.5.14)에서 조중측은 정전협정 13항 ㄴ목을 인용, 서해 5개 섬은 북한측 연해에 있으며 유엔측이 다만 이를 통제할 뿐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서해 5개 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하고 북한측 초계정의 우리측 해역 침입을 비난하고, 서해 5도에 관련한 북한측의 주장 또한 억지이며 차후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우리측 해역에 월경행위를 즉각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어선 격침 및 나포행위,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장애물 설치, 침투행위,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정찰기 정탐활동,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군용선박 공격 및 격침, 민간항공기에 대한 사격행위, 핵무기 반입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4년도 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CET0056243 제79차 군사정전위원회의 관계자 기념촬영, 1957

- 7) 제13항(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준다.
- 8) 제15항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4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1차~제355차

관리번호 : CA0004575

쪽수 : 363쪽

생산일자 : 1974년 6월 7일 ~ 1974년 10월 25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1차(1974.6.7)~제355차(1974.10.25)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 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측은 우리측 무장 함선이 정탐 활동과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북한측이 정당조치로 우리측 함선을 나포하고 인원들을 생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 고성능 초계정이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던 경비정 863호를 나포하고 인명을 살상한 북한측의 만행을 비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1차~제355차 회의는 모두 조중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는데,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록 자료에서의 특이사항은 유엔측이 제353차 회의에서 비무장지대의 재비무장화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을 제의한 내용이다.

제351차 회의(1974.6.7,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정전협정 13항 ㄱ목¹⁰⁾을 위반하고 F-4팬텀 전투 폭격기를 남한으로 반입하였다고 항의하고 정전협정 61항¹¹⁾과 62항¹²⁾을 언급하면서 우리측이 정전협정(13항 ㄱ목)을 일방 파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북

한 제5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SR-71 정찰활동과 구축함을 이용한 해상침범을 비난하고 미국이 남한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장갑차 등 중무기 반입과 총격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발간한 책자를 공개하면서 북한측의 군사장비의 증강상태를 폭로하고 북한의 기만성을 비난하면서 북한측은 지난 2년 동안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발언 중 75%가 군사정전위원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2월 15일 북한측에 강제나포된 ‘수원33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제352차 회의(1974.7.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6월 26일 동해안에서 우리측 무장 함선이 정탐활동과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북한측이 정당조치로 우리측 함선을 나포하고 인원들을 생포하였다고 주장하고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과 총격사건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 고성능 초계정이 동해안 군사분계선 연장선상 공해 부근에서 남한 어선들의 착오에 의한 나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던 경비정 863호를 나포하고 인명을 살상한 북한측의 만행을 비난하였다.

제353차 회의(1974.8.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SR-71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을 정탐하고 있으며, 전투기들을 침범시켜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남한의 애국청년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이를 북한측에 뒤집어씌운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에 박격포, 기관총 반입과 사격을 비난하였으며 미국이 남한에 군사원조를 증가하여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투기 침범과 정찰활동은 허위조작이라고 일축하고, 7월 24일 우리측 ‘썬스나 150형’ 민간 스포츠 항공기가 조종사의 방향감각 상실로 북한측 상공을 진입했을 뿐이며, 또한 7월 25일 대한항공 소속 민간 여객기가 이륙 직후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긴급조치 과정 중 북한측 비행구간에 잠시 있을 때 북한측이 대공포 사격을 하였음을 비난하였다. 비무장지대를 본연의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쌍무적 조치



CET0032029 군사정전위원회장에 전시된 모형비행기, 1974

계획을 쌍방이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된 인원 이외의 군사 인원 철수, 공동감시소조의 동시조사 후 통행을 방해하는 인위적 장애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2. 군사정전위원회는 당해 보고서를 토의 및 실천절차를 위한 회합을 갖고 장애물을 제거 후 공동감시소조가 제2의 조사실시후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 3. 군사정전위원회는 당해 보고서 토의 및 새로운 지역조사 위한 회합 4. 장애물 제거지역에는 군사인원 출입금지 및 민간인의 생업을 위한 출입허용 등' 이다.

제354차 회의(1974.9.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한강하구 및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지역에 대하여 포사격과 기관총 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고 SR-71정찰과 해상 침범을 비난하였다. 또한 남한의 '군현대화 계획' 을 위하여 "미국이 남한 내에 전투 장비를 반입시키고 철천지의 원수인 일본을 남한에 끌어 들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서해 5도 주변 해역이 유엔측 통제 아래 있다는 내용은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당 해역의 통제권이 북한측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을 언급하면서 북한측이 6·25전쟁 주범을 왜곡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실행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CET0032029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1974

제355차 회의(1974.10.2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핵무기를 적재한 함선 등 다량의 전투 장비를 남한 내로 끌어 들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기관총과 무반동포 반입과 사격을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회의(1973.12.1)에서 북한측이 서해 5도의 영해 통제권을 주장했음을 언급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전협정 13항 ㄱ목 기능을 잠정 보류시키는 것은 북한측의 무력증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의 무력증강 실태를 폭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1차~제355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SR-71정찰과

해상침범을 비난하였으며 남한의 '군현대화 계획' 을 위하여 미국이 남한내에 전투장비를 반입시키고 일본을 남한에 끌어 들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이 6·25전쟁 주범

을 왜곡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위한 실행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주로 어선 격침 및 나포행위,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장애물 설치, 침투행위,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정찰기 정탐활동,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군용선박 공격 및 격침, 민간 항공기에 대한 사격행위, 핵무기 반입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10) 제13항 (ㄹ)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금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과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 : 1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 11) 제61항 본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 12) 제62항 본 휴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15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21차~제429차

관리번호 : CA0004587

쪽수 : 390쪽

생산일자 : 1974년 1월 10일 ~ 1974년 12월 23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21차(1974.1.10)~제429차(1974.12.23) 회의록으로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측은 미국이 군사정전위원회 부근에 작전도로를 건설하여 북침을 위한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왕래를 방해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21차~제429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회의들은 대부분이 조중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비서장회의는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거하여 쌍방 합의 하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쌍방의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군사정전위원회에 관한 행정, 회의절차 및 사소한 위반사건 등을 주로 토의하였다.

제421차 회의(1974.1.1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기관총과 자동화기의 반입에 항의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불법으로 무장인원을 투입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측을 향하여 사격자세를 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우리측이 ‘비서처 기능’, ‘공동 일직관실 이용’ 등을 말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폭로를 막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을 협의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위반 항의

내용들을 공동 일직관실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들의 임무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들이 상호간에 그들의 비서장에게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비서장들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422차 회의(1974.3.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서장회의 개최를 우리측이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1974년 3월 3일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측 경비병들의 사진 촬영을 우리측 경비병들이 방해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부근에 자동무기를 휴대한 미군 100여 명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와 불법인원을 출입시켰다고 유엔측에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1974년 3월 3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경비병들의 폭행사건을 거론하고 이는 공동경비구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제423차 회의(1974.4.2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 우리지역과 공동경비구역지역 내에 중화기와 자동무기를 불법 반입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항의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일축하였다. 제424차 회의(1974.6.18,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제424차 회의시 항의한 우리지역 작전도로 건설을 거론하면서 도로건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공동경비구역지역에 자동무기와 기관총을 설치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도로건설은 군사정전위원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측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426차 회의(1974.8.2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남한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기지들을 신설하여 북침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근방에 작전도로 건설은 침략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기관총 반입과 불법인원들을 출입시키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우리측 차량이 이동할 때 북한측 경비병이 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정상적인 왕래를 방해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제427차 회의(1974.10.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CET0027072 주한미군부대를 시찰하는 포드 미국대통령, 1974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내에 중화기 반입을 계속하는 등 공동경비구역지역 내에서 우리 측이 계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우리측 인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제428차 회의(1974.11.11, 조중측 요청)에서도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기관총을 다량으로 반입하여 비무장지대를 요새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에 중화기를 반입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의 항의내용은 허위라고 일축하고 공동경비구역의 긴장을 북한측이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CET0039504 인양된 서해안 간첩선 모습, 1974

제429차 회의(1974.12.2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 함선들이 풍랑에 의해 표류하는 북한측 어선들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해적행위를 하였고 우리 측이 북한측 어선을 ‘간첩선’, ‘공작선’이라고 선전하였다고 항의하였다. 미국이 남한의 영구강점과 남한 당국자들이 독재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1974년 12월 15일 풍랑에 의해 떠내려 온 북한측 어선을 우리측이 북한측에 송환하기 위해 수리 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금번 사건은 어느 쪽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21차~제429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남한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기지들을 신설하여 북침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근방

에 작전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우리측 차량이 이동할 때 북한측 경비병이 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정상적인 왕래를 방해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어선 격침 및 나포행위,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장애물 설치, 침투행위,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정찰기 정탐활동,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군용선박 공격 및 격침, 민간 항공기에 대한 사격행위, 핵무기 반입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4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6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6차~제362차

관리번호 : CA0004576

쪽수 : 491쪽

생산일자 : 1974년 11월 26일 ~ 1975년 5월 27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6차(1974.11.26)~제362차(1975.5.27)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측은 북한측의 남침용 제2땅굴 굴석에 항의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중 유엔사측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에 대한 구타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조중측은 우리측의 땅굴 관련 비난은 조작극이라고 반박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 반입과 사격에 대해 비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6차~제362차 회의는 모두 조중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는데,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 제12,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록 자료에서의 특이사항은 유엔측 제356차 회의에서 북한측의 남침용 제1땅굴 굴설에 항의한 내용과 제361차 회의에서 북한측의 남침용 제2 땅굴 굴설에 항의한 내용이다.

제356차 회의(1974.11.2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북한이 판 땅굴을 발견했다는 땅굴¹³⁾ 관련 비난은 조작극이라고 반박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 반입과 사격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불법 굴착한 땅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항의하고, 11월 15일 북한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구축한 땅굴을 우리측 공동감시소조 인원들이 조사 중에 북한측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우리측 인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음을 알리고 북한측의 야만성을 비난하였다. 11월 15일 땅굴을 조사하던 우리측 인원을 향하여 북한측이 사격을 가한 행위를 항의하였다. 1966년 이후 우리측이 요청한 공동감시소조 운영을 65회 요구했으나 북한측이 64차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ET0035874 북한이 판 땅굴 모습, 1974

제357차 회의(1974.12.2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남한 내에 핵무기를 반입하여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박격포와 기관총을 반입하여 사격하였다고 비난하였고 미국이 유엔의 모자를 빌려 쓰고 남한 내에 불법 주둔하면서 남한의 무력증강을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사정전위원회와 무관한 내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해상에 표류 중인 북한측 어선 1척을 우리측 경비정이 인천항에 예인하였음을 알리고 우리측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측 선원들이 배에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선박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측이 불법적으로 80여km 정도의 철책선을 설치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제358차 회의(1975.2.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SR-71 정찰비행과 해상 침범,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에 대해 비난하였으며 미국이 남한 내에 핵무기와 각종 전투 장비를 반입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며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정찰비행 등 북한측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일축하고 군사정전위원회와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제359차 회의(1975.2.2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2월 15일 동해안에서 우리측이 표류 중인 북한측 정찰선(315호)을 공격하여 침몰시켰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2월 15일 남쪽으로 침투하려는 1척의 선박을 발견하고 우리측 경호함(57호)이 수하하였으나 북한측 선박이 사격을 하며 북으로 도주하고, 이에 우리측 경호함이 대응사격을 하여 북한측 선박을 격침시키고 1명의 인원을 구조했음을 설명하였다.



CET0035860 북한 해양 경비정 격침 사건을 반박하는 기자회견 중인 이규현 문화공보부차관, 1974

1973년 6월 28일 북한측이 우리측 경비정(863호)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측에게 반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60차 회의(1975.3.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2월 26일 우리측 구축함과 군함들이 어로작업을 하던 북한측 선박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측이 정체불명의 선박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 후 암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괴선박들은 이에 불응하고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어둠과 선박 무리들의 혼란 속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북한측 전투기들이 서해 5도 상공을 침범하였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우리측 ‘수원 33호’와 ‘경비정 863호’의 생존자들의 귀환을 촉구하였다.

제361차 회의(1975.3.2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남한 내에 전투장비와 병력을 끌어 들여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측이 항의한 땅굴은 조작극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새로이 구축한 비무장지대내의 땅굴 굴착사실을 공개하고 이는 1974년 9월 대한민국에 귀순한 김부○씨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것이며 1973년 11월 15일에 발견된 터널보다 규모가 큰 공격용 남침 땅굴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감시소조를 운영하여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62차 회의(1975.5.27)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에 불법으로 중무기를 반입하고 북한측 지역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굴착한 땅굴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제시하여 설명하면서 북한측이 굴착한 사실을 입증시킴으로써 북한측이 터널 경계선 차단벽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발시켜 조사 중 이던 우리측 인원들이 부상당했음을 주장하고 북한측의 야만성을 비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56차 ~제362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의 땅굴 관련 비난은 조작극이라고 반박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 반입과 사격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불법 굴착한 땅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항의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어선작업 선박에 대한 공격, 비무장지대의 땅굴 굴설, 민간인납치, 진지구축,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영공침범사건,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무장인원 침투, 핵무기 반입 등에 항의하는 내

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5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3) 북한에서 파내려 오다 발견된 남침용 땅굴은 4개이다. 서부전선 지역에 2개(제1호, 제3호 땅굴), 중부전선 지역에 1개(제2호 땅굴), 동부전선 지역에 1개(제4호 땅굴). 제4호 땅굴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전 전선 지역에서 남침용 땅굴을 굴설 하였음이 입증되었다. 남침용 땅굴은 1971년 9월 25일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 폭탄 보다 효과적이다”이라는 김일성의 지시로 1972년 5월부터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2년 후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고랑포 비무장지대 내에서 최초로 남침용 땅굴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1975년에 발견된 제3호 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44km거리에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17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63차~제369차

관리번호 : CA0004577

쪽수 : 554쪽

생산일자 : 1975년 5월 27일 ~ 1975년 12월 10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63차(1975.6.11)~제369차(1975.12.10)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측은 본회의 도중 유엔측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에 대한 북한측 경비병들의 구타행위를 비난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경비병이 우리지역을 향한 권총사격 자세에 항의하였으며, 조중측은 유엔측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이 먼저 북한측 인원을 구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63차~제369차 회의는 모두 조중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는데,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록의 특이사항은 유엔측이 제365차 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중 유엔사측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에 대한 북한군의 구타행위에 항의한 내용과 제367차 회의에서 대성동 마을 민간인 납치에 대한 항의 내용이다.

제363차 회의(1975.6.1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이 북한측을 향

하여 수백 발의 기관총과 소총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 전투기가 서해 5도의 백령도, 위도 상공을 침범하고 무장인원을 침투시킨 사건을 비난하였으며 북한측이 굴착한 땅굴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였다. 제364차 회의(1975.6.3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에 진지구축작업과 총격사건, 아울러 우리측 해군의 정탐행위에 대하여 비난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기관총과 중화기 반입 그리고 핵무기의 남한 내 반입을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요새진지 조사를 위하여 공동감시소조 조사를 제의하였고 제75차 본회의 시 정전협정 13항 ㄱ목에 대한 중지선언 정당성을 언급하고 남침이 북한측의 책임임을 재강조하였다.

유엔사측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에 대한 구타사건이 발생하자, 제365차 회의(1975.7.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6월 30일 구타사건은 유엔측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이 먼저 북한측 인원을 구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6월 30일 제364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도중 유엔측 경비부대장 해리스 소령에 대한 북한측 경비병들의 구타행위를 비난하였고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초소 경비병이 우리지역을 향해 권총사격 자세를 취한 행위를 항의하였다.



CET0035934 판문점 회담장소에서 벌어진 유엔 북한 병사가 미군 헌병 폭행사건 모습 모습, 1975

제366차 회의(1975.7.30),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수천 명의 병력을 끌어 들여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탱크 등을 반입하여 적대 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남한 내에 불법 반입한 전투장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7월 18일 우리측 지역에 대한 북한측의 기관총 사격과 서해 5도 상공에 북한측 항공기의 침범을 비난하였으며 북한측의 전투장비 증강사실에 항의하였다. 제367차 회의(1975.9.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탱크와 중무기 반입, 그리고 미국의 남한 내 전투장비 반입계획을 비난하였으며 남한 내에 핵무기 반입을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8월 26일 북한측이 대성동 마을 민간인 1명(김○○)을 강제 납치하여 갔음을 항의하고 이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제368차 회의(1975.10.2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정전

협정 13항 ㄹ목을 무시하고 미군이 불법적으로 남한 내에 전투 장비를 반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 군용항공기가 우리측 영공에 침투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였고, 대성동 주민 김○○ 납북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공동감시소조가 회합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최근 일련의 북한측의 정전협정 위반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북한측의 위반행위를 항의하였다. 제369차 회의(1975.12.1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무반동포, 탱크반입과 기관총 사격을 비난하고 남한 내에 유도탄과 핵무기 등 전투장비 반입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준수할 때까지는 이에 관한 유엔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북한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에서 정치적 발언 등 군사정전위원회 권한 밖의 내용들을 발언하고 허위와 조작, 수사학적이며 비현실적인 내용들만을 들고 나와 항의하고 비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63차~제369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13항 ㄹ목을 무시하고 미군이 불법적으로 남한 내에 전투 장비를 반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유엔측은 북한측의 군용항공기의 우리측 영공 침투행위에 대해 비난하였고 대성동 주민 김○○ 납북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공동감시소조가 회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땅굴 굴설, 민간인납치, 규정표식 불이행, 진지구축,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영공침범사건, 무력증강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5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8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30차~제438차

관리번호 : CA0004588
쪽수 : 351쪽
생산일자 : 1975년 1월 23일 ~ 1975년 12월 24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30차(1975.1.23)~제438차(1975.12.24)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대규모적인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측이 땅굴사건을 꾸며서 허위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유엔측은 북한측 선박들의 침몰사건은 북한측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해양 절차를 무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30차~제438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회의들은 대부분이 조중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비서장회의는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거하여 쌍방 합의 하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쌍방의 비서장으로 구성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관한 행정, 회의절차 및 사소한 위반사건 등을 주로 토의하였다. 제430차 회의(1975.1.2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북한측 어선을 우리측이 강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선을 수리하지 말고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북한어선 월남사건에 대한 제반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정치적 선전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은 비서장회의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제431차 회의(1975.3.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CET0032032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모습, 1975

내에 기관총과 자동화기를 반입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고 1975년 2월 15일 동해상에서 북한측 순찰선을 사격하고 승무원을 납치하여 갔다고 비난하였으며 1974년 12월 15일 우리측이 북한측어선을 강제납치하여 갔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항의내용은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겠다고 언급하고 북한측 어선은 운항이 불가하므로 수리 후에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432차 회의(1975.4.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대규모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식별표식을 하지 않은 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우리측이 주장한 땅굴사건은 허위날조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서장회의는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행정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1975년 2월 15일과 2월 16일에 발생한 북한측 선박 침몰사건¹⁴⁾은 북한측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해양 절차를 무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433차 회의(1975.5.1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우리측 경비병이 북한측 경비병을 향하여 권총을 겨냥하였다고 항의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자동화기를 반입하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정전협정위반사항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서장회의에서 다루지 말고 공동 일직관실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측의 항의내용은 허위날조라고 일축하였다.

제434차 회의(1975.6.2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우리측이 자동무기들을 불법반입하고 군사인원들을 대대적으로 집결시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비서장회의 내용과 상관없는 허위 날조한 사건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제435차 회의(1975.8.1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공동경비구역 부근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자동무기를 반입하였다고 항의하고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공동경비구역 긴장완화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음을 언급하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

하였다.

제436차 회의(1975.9.3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갯창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에 들어왔다고 항의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M-16 자동화기와 불법인원을 출입시켜 군사훈련을 하면서 대규모 전투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제437차 회의(1975.11.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대성동 마을에서 거주하다 북한측으로 망명하였다는 사람의 녹음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서 미군들이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쌍방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회의를 악용하고 선전을 위한 허위날조로 시간만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38차 회의(1975.12.24,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 우리측이 도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식별표식이 없는 인원들의 출입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공동경비구역 내의 긴장완화에 호응하여 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인 긴장완화 노력에 힘을 쓸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측의 항의내용들을 근거 없는 허위 날조한 내용들이라고 일축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30차~제438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우리측이 자동무기들을 불법반입하고 군사인원들을 대대적으로 집결시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유엔측은 비서장회의 내용과 상관없는 허위 날조한 사건들로 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것을 촉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땅굴 굴설, 민간인 납치, 규정표식 불이행, 진지구축,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영공침범사건, 무력증강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5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4) 1975년 2월 북한 어선 10여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경하였는데 한국 해군함정이 북한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